

2004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 報告書

2004. 12.

서울特別市議會 交通委員會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	1
1. 목 적	-----	1
2. 근 거	-----	1
3. 기 간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사실시기관	-----	2
6. 일정 및 장소	-----	2
7. 주요감사내용	-----	3
II . 감사결과	-----	11
1. 총 괄	-----	11
2. 시정조치 요구사항	-----	11
3. 건의사항	-----	21
4. 자료요구사항	-----	30
III . 기타감사의견	-----	32

2004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I. 감사실시 개요

1. 목 적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인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6조

3. 기 간

- 2004.11.22.(월)~2004.12. 1.(수) [10일간]

※ 제25회 정례회

- 2004.11.20.(토)~12.18.(토) [29일간]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감사 위원장	감사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교통위원회 (14)	이대일	신영선 문진국	김동훈, 이동거, 이임주, 이종은, 이한기, 조성대, 진두생, 최홍우, 한봉수, 허만섭, 손석기	임령, 안운길 최경환, 이은웅 김은숙, 박은영

5. 감사실시 기관

위원회명	감사기간	감사실시기관	비고
교통위원회	2004. 11. 22. ~ 2004. 12. 1.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교통방송본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6. 일정 및 장소

일시	수감기관	장소
11.22.(월) 10:21~18:13	교통국	교통위원회 회의실
11.23.(화) 10:12~18:13	교통국	교통위원회 회의실
11.24.(수) 10:07~12:45	지하철건설본부	교통위원회 회의실
11.25.(목) 10:14~18:34	지하철공사	지하철공사 회의실
11.26.(금) 10:29~14:09	지하철공사	지하철공사 회의실
11.29.(월) 10:13~17:58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회의실
11.30.(화) 10:18~16:38	교통국	교통위원회 회의실
12. 1.(수) 10:40~13:49	교통방송본부	교통방송본부 회의실

7. 주요감사 내용

가.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감사자료 및 문서확인 등

나. 중점 감사사항

<공통사항>

-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 2003~2004.10 예산집행 현황 및 불용액
-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 2003~2004년도 각급 감사기관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 국정감사, 시의회행정사무감사,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담당관 처분통보 및 조치사항
- 2003~2004.10 각종 민원처리 현황
 - 인·허가,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요지 및 처리내역
- 2003~2004.10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법령, 자치법규 (조례·규칙)등의 제·개정, 폐지 및 정비 현황
- 2003~2004.10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행정,민사,형사 등) 현황 및 계류, 승·패소사건
- 2003~2004.10 업무추진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각종 법령 현황

-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 2003.1~2004.10 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처리현황
- 2005년 신규사업 예산편성 요구 현황
- 2004년 예비비 지출현황(국고보조사업 포함)
 - 사업명, 소요예산, 추진배경, 집행성과, 지출사유 등
- 2004년도 예산 전용현황
 - 관련사업, 금액, 전용사유
- 2003~2004.10 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처리현황
- 각종 위원회 현황
- 2003~2004.10 소관업무에 대한 분기·반기·연도별 심사평가담당관의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한 조치내용, 향후계획 및 심사평가 결과 등
- 최근 5년간 시행한 연구용역(기본연구과제, 학술·기술용역 등 포함)
 -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기간, 소요예산, 용역내용, 시책에 반영한 시기, 내용 등
- 2003~2004.10 서울시와 중앙정부(건교부 등)간 질의, 협의, 승인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내용
- 5년간 소관기관 부서별 정원/현원 현황
 - 인원 증감시 사유 등

<교통국>

부 서	주 요 업 무
교통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통대책수립·추진, 교통수요관리, 교통영향평가 ○ 광역교통계획,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 지하철 양공사 지도감독 등
운수물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송사업, 대여사업, 화물운송사업, 화물터미널 ○ 자동차관리, 자동차매매·정비·폐차업, 창고업 등
주차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관련 제도개선, 주택가 주차시설확충, 터미널 ○ 민자유치·시비투자 주차장건설, 환승주차장건설 등
교통지도단속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단속원 및 교통서포터즈 관리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등
교통개선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체계개편 총괄, 버스운영체계개편, 시민위원회 ○ 수입금공동관리, 재정지원, 노선계획·인면허 등
대중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조합 및 노조관리, 버스업체평가, 버스요금 ○ 배차·운행관리, 증·감차, 운행지도점검, 차고지 ○ 정류소, 차량고급화, BMS(버스사령실) 운영 등
교통정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운영, 교통상황분석 ○ 신교통카드시스템 운영, 운수 통합시스템 운영 등
교통운영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행안전, 도로표지설치 ○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 설치 및 교통관리센터 운영 ○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정비 등
도심교통개선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체계개편사업, 동북부체계개편사업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설치, 경찰규제협의 등

<지하철건설본부>

부 서	주 요 업 무
서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운용계획수립 및 조정 - 인사, 복무, 문서관리, 의회관련 업무 총괄 - 조직 및 정원관리, 홍보, 법제,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배정·재정합의에 관한 사항
설계관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신교통시스템 중장기 계획에 따른 건설계획 수립 - 지하철건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총괄 - 지하철건설 민자유치 총괄, 수탁공사의 협의 조정 및 물동계획 -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지도 관리 총괄 - 사업비 지출의 총괄 및 결산,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공 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계획 및 진도관리,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총괄 -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심사 및 물가변동기준 수립 총괄 - 토목공사의 계획 및 시공관리(901~906, 301~302공구) - 궤도설계 및 시공관리, 분쟁업무 총괄(소송, 중재 등) - 환승편의시설의 시공관리(환승편의시설 6, 7공구)
건 설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분야의 책임감리 총괄 - 공사장 수방·제설 등 재해대책 수립 및 총괄 -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건물 보수·보상 총괄 - 토목공사의 계획 및 시공관리(907~914공구) - 환승편의시설의 시공관리(환승편의시설 4, 5공구)
설 비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의 시설계획 - 지하철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의 설계 및 시공관리 - 차량의 수급계획 설계 및 제작관리 - 환승편의시설의 시공관리(편의시설4~7공구) - 역무자동화 설비의 설계 및 시공관리 - 신교통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관리
시설개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하철의 시설개량 총괄, - 환승편의시설 시공관리(1~4호선, 편의설1~3공구, 8~13공구) - 건축, 전기, 기계, 신호, 통신설비의 개량 - 지하철관련 건축물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관리 지원

<교통방송본부>

부 서	주 요 업 무
경영기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 인사·복무 및 직원후생 ○ 예산 편성 및 운영 ○ 세입·세출예사의 결산업무 ○ 협찬방송에 관한 사항
라디오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라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예산 및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 라디오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 ○ 방송출연자 관리, 방송제작진 및 리포터 운영 ○ 라디오방송 뉴스 취재·편집·제작 및 보도용 녹음물 제작
TV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제작예산 및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 ○ 뉴스 취재·편집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기술제작 지원
뉴미디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미디어국 관련 일반 행정 및 예산의 편성·운영 ○ 뉴미디어(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개발 및 참여 ○ 라디오 방송기술업무 총괄 ○ 인터넷 교통방송의 편성 및 운영
심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심의 및 평가 ○ 방송청취형태의 조사 ○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사항 ○ 우수프로그램 평가 및 시상

<지하철공사>

부 서	주 요 업 무
기획경영실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조직 및 정원 관리, 시의회 및 국정감사 총괄, 경영개선업무 및 신경영기법 도입, 예산편성 및 관리, 정관 및 사규 관리, 소송업무
안전관리실	방재(화재, 풍수해, 월동, 지진 및 기타재해)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본부 운영, 안전수칙 및 안전기준 설정지도, 안전사고와 운행 장애 조사처리, 현장 안전점검 지도 및 시정조치
사업개발실	신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총괄, 부대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역구내상가 운영 및 임대관리, 역구내, 전동차내 및 편의시설물 등 유상 광고, 역구내 부대시설물 임대관리 및 신규개발, 역구내 여유허용 방안수립
홍 보 실	홍보계획 수립 및 관리 총괄, 간행물 제작, 도서자료 운영 및 각종 자료수집, 해외협력업무, 기타 홍보(홈페이지 총괄 등)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처	인사계획 및 관리, 교육훈련계획 및 관리, 노사계획 및 관리,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 사내복지기금 지원, 급여 및 복리후생계획 및 관리, 기타 인사, 급여, 노사,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지원관리처	이사회 및 임원실 운영, 행사, 의전업무의 표준화 및 관리, 문서관리 총괄, 청사 및 업무용차량 관리, 사무실 표준화 업무, 자금조달운용 및 부채관리, 경리 및 세무관리
전산정보처	MIS 전산화 종합계획 및 관리, 수송관리, 인사, 급여, 재무, 회계분야 등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연구 및 지원, 전산 시설 유지관리, 부문별 경영정보시스템 통합업무 기술지원
비상계획실	비상계획 수립 및 조정,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 보안 및 경비업무,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업무 총괄, 기타 비상계획, 방호에 관한 사항
교 육 원	연간 교육훈련 세부 시행계획수립 및 집행,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육 효과의 측정·평가
영 업 처	수송계획 및 관리, 마케팅 등 영업계획·관리, 운수영업제도개선, 영업에 관한 대외협약 및 관리
열차운영처	열차운행계획 수립, 대외 운전협약 관리, 승무원 운용관리 및 승무다이아 제·개정, 승무소 업무 지도감독
차 량 처	전동차 수급계획 및 관리, 전동차 정비계획 및 관리, 차량 사업소 업무 지도감독, 기타 전동차 및 차량기지에 관한 사항

부 서	주 요 업 무
종합사령실	지하철 안전의 종합상황 관리, 열차운행 및 승객통제 관리, 사령설비 유지보수, 시설 및 기전설비의 운용과 장애감시 및 통제, 기타 사령업무에 관한 사항
시 설 처	토목, 건축시설물에 대한 계획 및 관리, 구조물 연결통로 및 인접공사 관리, 유관기관의 건축, 토목시설 위·수탁관리, 토목사무소, 건축사무소, 교량사무소 업무지도 감독
철도토목처	궤도시설물에 대한 계획 및 관리, 궤도점검 장비 운용 및 관리, 유관기관의 궤도시설 위·수탁 관리, 철도토목사무소 및 철도 장비사무소 업무지도 감독
환경설비처	환경 및 설비시설물에 대한 계획 및 관리, 환경(소음·진동, 공기질, 수질, 폐기물 등)관리, 설비의 유지관리, 유관기관 환경·설비의 위·수탁관리, 설비사무소 업무지도 감독
전 기 처	전기설비에 대한 계획 및 관리, 전력요금 총괄 및 전기관계 업무 종합 조정, 전기사무소 업무 지도감독
신호통신처	신호, 정보통신, 전자설비에 대한 계획 및 관리, 유관기관의 신호, 정보통신, 전자설비의 위·수탁관리
기술연구실	지하철의 기술효율성 향상 연구개발 및 성과 보급, 지하철의 표준화 설계 및 관련기술 연구개발, 지하철의 안전성 확보, 지하철시스템 용품의 표준화관련 기반 기술연구, 지하철 안전기술 자립기반 및 안전성능 확보방안 연구개발
감 사 실	회계 및 업무감사, 외부감사 지원 총괄, 특명사항 처리

<도시철도공사>

부 서	주 요 업 무
기획경영실	주요정책사업 기획 및 업무현황 관리,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조정 예산계획 및 편성지침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관 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개선계획의 수립 및 실적관리
안전관리실	안전운행 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운전사고·장애·사상사고 원인분석 및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개발실	지하철 주변지역 개발업무, 도시계획사업 수행, 신규수익사업 개발·추진
홍 보 실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보도매체 모니터링 및 대외촬영 협조

부 서	주 요 업 무
인력관리처	인력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직원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보수 지급 및 임금제도 관련, 노·사관계 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관리처	회의·의식·의전행사 업무, 대내외 문서수발, 통제 및 문서보존 업무, 현금, 예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업무 지급수급계획 수립 및 집행, 고정 재고 자산관리계획 및 제도의 연구발전
전산정보처	전산설비 도입·유지관리,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전산시스템 개발, 근거리 통신망 관리업무
비상계획실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비업무
영 업 처	수송계획의 수립, 영업사고 처리 및 여객안전사고방지에 관한 사항, 운수수입금 심사조정 및 징수총괄, 부대사업계획 수립, 도시철도 이용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운 전 처	열차운전계획에 관한 사항, 승무원 운용계획 및 승무원 근무표 작성관리, 승무관리소 업무지도·감독
차 량 처	차량분야 기본사업계획의 종합 및 조정, 전동차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 업무, 전동차 중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사령실	전동차 운행 전반에 관한 사항, 열차운행 감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전력·기계·설비·신호·정보통신사령제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관리처	시설관리분야 소관업무 총괄, 궤도구조물 개량 유지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정, 도시철도기본계획 설계관리업무, 건축시설물 개량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정
전기설비처	변전 송배전설비의 건설, 개량공사 설계 및 감독, 전차선 역사 전기 설비 운영계획 수립
신호통신처	신호설비 신설, 개량공사 계획, 개량 관련 업무, 정보통신분야 기본 계획수립
감 사 실	소관분야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II. 감사결과

1. 총괄

구분	계	시정조치 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요구 사항	처리 요구사항
계	197	79	79	39	
교통국	51	25	17	9	
지하철건설본부	15	5	3	7	
교통방송본부	28	10	16	2	
지하철공사	51	17	23	11	
도시철도공사	52	22	20	10	

2. 시정조치 요구사항 : 총 79 건

< 교통국 > : 25 건

1. 택시 운전자의 전립선 검사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전립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람.
2.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연구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지하철,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에 대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택시 정류장 관리가 부실함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5.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은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6.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등을 분기별로 일제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7. 교통국은 지하철 양공사 및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운영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지도감독이 전무한 형편이므로, 향후에는 지하철 양공사 및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바람.
8. 서울시의 버스체계 개편에 따라 운수업체들이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무사 안일로 앉아서 수입금만 챙기는 분위기로 바뀌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말뿐인 실정이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바람.
9. 2004. 7. 1.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준공영제를 도입함으로써 운수업체는 손익에 관계없이 주행거리에 따라 수익을 보장받다보니 민원을 앞세워 증차를 요구하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버스증차는 업계의 이해관계 보다는 시의 일관된 정책에 의해 결정하기 바람.
10. 경찰청이 집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서울시(주관국, 감사관)와 시의회에서 심사 통제할 시스템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지하철공사의 무임승차 요금이 금년에 약 8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바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기 바람.
12.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한 교통정체가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통해소를 하기 바람.

13.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함.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람.
14. LED 신호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기 바람.
15.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굴절버스가 대물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운행 차질이 예상되는 바, 굴절버스가 대물보험에 가입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16.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기도 안양에 소재하는 농촌문화연구회에 위탁교육을 지양하고, 아울러 운영자문위원회에 위촉된 김일주(농촌문화연구회 이사장)는 위탁교육 이해 당사자이므로 해촉하기 바람. 또한 이에 따른 교통문화교육원 2005 예산도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만 실시하는 조건으로 편성하였음을 유의하기 바람.
17.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담당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체납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8.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대포차량 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 대포차량에 대한 계획수립 후 단속바람.
19.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이용불편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0. 사업자가 선정한 영향평가 대행자는 사업자의 입장을 합리화 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로 민원발생이 빈번하므로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평가비용을 공탁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공탁제도 도입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바람.

21.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시 및 준공된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행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하나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의 답변은 교통국에서는 교평 심의만 해주지 사후관리 책임은 전혀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무색하게 하는 위증 답변의 책임을 져야하고 향후 영향평가 업무전반에 대한 지식을 터득한 후 업무보고시 답변에 임하기 바람.
22. 영향평가심의위원 위촉시 평가 대행사 임직원을 위촉할 경우 심의위원의 자회사는 물론 대행사 상호 로비에 의한 직·간접적으로 심의해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로 영향평가 자체의 불신으로 재평가 요구의 민원발생이 있는바 평가 대행사 임직원을 심의위원 위촉에서 즉시 배제할 것.
(매년 9명의 평가 대행사 임직원 위촉하고 있음.)
23. 영향평가심의위원 중 평가대행사 임직원이 소속회사 평가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며 행감시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께 사실 확인 증빙서류 4건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직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고 위증 답변한 것은 시의원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위증 답변에 대한 의법조치하여 향후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시의원을 무시하는 풍토를 없애도록 하기바람.
24. 굴절버스 4대(20억원)구입 예산편성과 관련, 의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다른 예산으로 굴절버스 20대를 도입한바 향후 의회 의결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자는 처벌하기 바람.
25.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5개 사업은 민간위탁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 지하철건설본부 > : 5건

1. 지하철공사 관련 258건이 소송제기(2기 지하철 255건, 9호선 3건)되었는바, 우리시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패소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책에 완벽을 기하여 동일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실시 설계용역 성과품에 의한 대형 공사의 발주시에 현장상황과 다소 적합하지 못하여 빈번한(2회~5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므로써 공기지연, 도급비의 물가상승반영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설계용역 발주시 세심한 과제 부여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3. 지하철9호선 노량진 일대의 3개 공사장 부근이 교통이 혼잡하므로 교통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4.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마들역, 노원역 등이 설치계획에 비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공사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설치계획 내에 준공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5. 지하철공사 수행능력 평가시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다 보면 공사 선정업체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됨.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바람.

< 교통방송본부 > : 10건

1. 매년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진행비가 전년도에 비해 2~3배 지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음. 동일 행사를 하면서 전년도 보다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는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서울시에는 특화된 업무를 종사하는 직렬(예 : 편집기자, 방송기자 등)이 있으나 연봉이외 별도의 진행비 및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교통방송본부에서 몇몇 직원에게 지급하는 진행비 등은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공영·민영방송(KBS, MBC 등)의 지급사례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서울시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교통방송본부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아울러 예산 낭비요인이 되므로 지급 근거가 되는 서울시 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진행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기 바람.

4. 교통방송본부 광고협찬 수입은 세출예산에 비해 미미하니, 특단의 광고협찬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교통방송이 잘 시청되지 않는 일부 지하차도, 터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가청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6. 협찬 방송금 미수금은 결손처리보다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금을 해소하기 바람.
7.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건의 및 민원사항은 주기적으로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방송제작에 도움되는 건의 및 민원내용은 적극 반영하기 바람.
8. 교통정보 접수요원이 불친절하므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기 바람.
9. 진행비를 지출함에 있어 영수증 처리가 전혀 없음.
이를 집행한 회계 책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향후에는 영수증이 없는 진행비는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0. 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교통국의 사전 심사를 받기 바람.

< 지하철공사 > : 17건

1. 노조 전임자 운영이 정부기준(11명)보다 많은 25명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람.
2. 지하철 1~4호선 전 구간에 시각 장애인의 점자 블록이 선로로부터 충분한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시정하여 사고 방지에 주력하기 바람.
3. 예산 편성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결정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4. 지하철 심야운행은 사업의 수익성, 승객 수송 기여도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종합 평가하여 시행하기 바람.
5. 향후 수익증대 고부가가치사업 유치시는 사업계획 초기에 다각도로 검토·비교 분석하여, 공사 자체에서 직접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공사 수익성 향상을 제고하기 바람.
예) 지하철 이동통신사업 및 설비 유지관리사업 등
6. 직원 및 가족용 무료승차권 지급은 노·사간 협의 사항이긴 하나 철도법 및 공사 후생복지 규정 등을 보면 공사가 만성적자에 허덕이면서까지 무료승차권 지급을 의무화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합의를 통해 향후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는 공사 측 방침을 전달하고 협상 결여시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직원 및 가족용 무료승차권 지급을 개선하기 바람.
7.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사의 지하철 광고 미수금 회수대책이 너무 안일하므로, 향후 악성 미수금 결손처리 전에 보다 적극적인 회수 방안 강구하고 아울러 광고책임자에게 변상조치 및 이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 책임감 고취하기 바람.

8. 공사의 적자 요인중 가장 큰 이유는 공사 예산의 80%를 상회 하는 직원 인건비임. 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흑자경영이 되기 전까지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개선하기 바람.
9. 홍제역 임대상가를 재임대 받은 상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못 받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봐 관리소홀한 공사관계자를 징계하고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10. 잠실역 출입구를 보면 많은 광고부착물이 있음. 부대사업 수입 증대를 위한 것으로 이해는 가지만 승객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광고물은 조치하기 바람.
11. 부품구매 내역서 중 동일 품목이 월별로 가격차이가 나타나는 부품이 있는데 연간단가 계약물품이라면 동일가격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2. 3, 4호선 전동차 내에 비치된 방연마스크는 개봉 및 착용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로 직원들을 열차 1량에 태우고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한지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 대안을 모색하기 바람.
13. 이동통신사업은 고부가가치사업임에도 공사가 직접 참여하여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치 않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실에서는 조사해서 보고하기 바람.
14. 전동차내 방송장치 관리소홀로 안내방송 상태가 불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5. 합정-당산역 구간 통신케이블, 전기선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조치바람.
16. 역사내 무점포 임대는 노점상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근절 조치하기 바람.

17. 무임승차승객(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등)수를 전산관리 하여 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도록 하고, 국고지원이 안 될시는 법원 제소 등 특단의 조치를 하기 바람.

< 도시철도공사 > : 22 건

1. 차량기지 내 설치된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노후화 된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되므로, 와이어로프를 일제 점검하여 노후화 된 것은 교체하기 바람.
2. 역사내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에는 유해물질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처리시에는 환경오염(토양오염 등)이 발생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3.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4. 불필요한 자재구입을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예산 낭비와 수의계약을 통한 적정가 이상의 자재구입 현상이 있음.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바람.
5. 지하터널 토목공사의 하자로 인한 크릭, 누수, 침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제를 실시하여 사전에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6. 승강기 등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몇 개 회사에 편중되어 있는데 공개입찰을 통해 관리비가 저렴한 우수한 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관리가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7. 전동차 출입문 양쪽 상단에 광고물 6장씩 겹쳐서 청결성이 결여되므로 조치하기 바람.

8. 무임승차승객(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등)수를 전산관리하여 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도록 하고, 국고지원이 안 될시는 법원 제소 등 특단의 조치를 하기 바람.
9. 천호동 메인 휴게실 천정에 설치된 시설물(별하늘)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10. 역사내 무점포 임대는 노점상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기 바람.
11. 직원 및 가족용 무료승차권 지급은 노·사간 협의 사항이긴 하나 철도법 및 공사 후생복지 규정 등을 보면 공사가 만성적자에 허덕이면서까지 무료승차권 지급을 의무화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합의를 통해 향후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는 공사 측 방침을 전달하고 협상 결여시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직원 및 가족용 무료승차권 지급을 개선하기 바람.
12. 공사의 적자요인중 가장 큰 이유는 공사예산의 80%를 상회하는 직원 인건비임. 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흑자 경영이 되기전 까지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개선하기 바람.
13. 지하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의 보라매공원(병원)방향은 유동 인구가 많으나 출입구가 없어 이용시민이 불편을 느끼므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 또 사고예방을 위해 출구를 설치하기 바람.
14. 향후 수익증대를 위한 부대사업 유치시는 공사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 및 콘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각도로 검토·비교 분석하여 고부가가치사업 참여에 보다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로 공사를 경영하기 바람.
(예 : 이동통신관련 사업 등)

15.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사의 지하철광고 미수금 회수대책이 너무 안일하므로, 향후 악성미수금 결손처리 전에 보다 적극적인 회수 방안 강구하고 아울러 담당책임자에게 변상조치 및 이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 책임감 고취하기 바람.
16. 지하철 심야운행은 사업의 수익성, 승객 수송 기여도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종합 평가하여 시행하기 바람.
17. 부정 승차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더 올려 무임승차 행위를 근절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8. 역사내 지하철 광고가 기둥에까지 광고를 하여 승객 동선에 방해가 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바람.
19. 재고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동차 부품을 구매하는 것은 재고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20. 지하철 역명이 유사한 경유가 많은데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1. 발산역 휠체어리프트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고 안전 바도 없어 휠체어리프트 이용에 불안함.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기 바람.
22. 지하철과 관련하여 해외교류 부분이 취약한데 해외 지하철과의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 건의사항 : 총 79 건

< 교통국 > : 17 건

1. 중앙버스차로제 정착을 위하여는 환승 시간 단축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그린파킹 2006 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차장 설치시는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한 후 나무를 식재하지 않아 도시가 삭막하므로 나무식재 등으로 녹화사업도 병행하기 바람.
3. 자동차 허넘버(렌트카)를 현실화 하던지 단속강화하고, 6개월 이상 장기계약시는 세제상 손실이 발생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전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인 1급 정비공장, 임대 APT, 레저시설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관계기관에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바람.
5. 대중교통 개편 후 일일 10만원 미만 수입노선 등 적자 요인이 발생하는 노선은 조정이 있어야 하며, 적정수 이상의 버스 대수는 구조 조정하여 감차하여야 한다고 보이므로 개선하기 바람.
6. 2004. 1. 1.~2004.9월 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368,886건을 견인한 것은 일면 견인업체의 수입을 위한 견인으로 볼 수 있음. 교통체증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견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함.
7. 서울특별시 정책은 후관리에서 전관리로 전환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람.
8.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은 업체에 대한 운영관리개선사항, 서비스 향상 등을 체크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에 의한 차등 재정지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람.
9. 대시민 관련 주요정책 결정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노출시켜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과의 충분한 공청회 등 완벽한 여론 수렴후 시행하기 바람.

10. 어린이집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지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1. 규제 단속 업무중 불필요한 업무의 대폭완화와 시민편익을 위한 창안(제안)제도 개발 활성화로 시민 서비스 제고하기 바람.
12. 마을버스 정류장 수를 확대 검토하고 23개구 마을버스 공영주차장 건립을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13. 가로변 버스전용차선 단속 강화하기 바람.
14. 대로변 무단박차 차량 단속 강화하기 바람.
15. 교통방송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직 재계약시는 심사를 철저히 하고 20~30%는 유능한 인재로 교체하기 바람.
16. 경기도 차량의 서울시 진입시 교통정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선(특히 사당로 회차 지점) 조정 및 단속 강화하기 바람.
17. 현재 서울시의 각 실·국 중요한 심의위원에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이 다소 전문성은 미흡하나 시민의 대표성을 인정받고 참여하고 있으나 유독히 교통국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는 전문성을 내세워 시의원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여러 적절치 못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전문성은 다소 미흡하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이론적인 면보다 현장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의견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시민의 대표로써 사업초기에서부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및 대안제시 기능이 필요하므로 2명 이상의 시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조속히 위촉하여 영향평가에 대한 의구심 해소와 공정성을 확보할 것.

〈 지하철건설본부 〉 : 3 건

1. 지하철 9호선은 지하수 유출이 많은 한강에 가까운 지하철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하수 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2. 9호선 지하철 공사현장에 교통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3. 2009.12.30. 준공예정인 지하철3호선 연장 건설공사는 잠실 지역의 혼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공사로, 잠실지역은 2007년 5개 저밀도 아파트 입주, 장지택지개발, 문정동 법조타운 및 물류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혼잡 대란이 예상되므로, 조기(2007년 또는 2008년)에 준공하여 지역 교통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목적에 부합하는 건설공사 요망

〈 교통방송본부 〉 : 16 건

1.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피상적·형식적 운영보다 자문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전문가 위주로 할 것.
2. 교통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엄청난 교통혼잡과 막대한 경제손실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성 문제 해소 방안강구
3. 교통정보처리 직원에 대한 예절교육, 친절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정보제공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4. CATV 개국을 위한 준비를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하여 2005년 3월 개국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5. 대중교통체계개편, 차량견인 등 서울시 교통정책 및 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계몽으로 사랑받는 교통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6. CATV 개국후 광고 수입증대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7. 교통방송 가청거리 확대하고 안개지역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적시에 방송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특집방송에서 모금된 금액은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으로 후원자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다양한 프로그램 방송으로 애청자를 확보하기 바람.
10. CATV 개국 후에도 교통방송 라디오국이 위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배려하기 바람.
11. 일반인의 라디오 청취율이 좀 더 신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2. 서울시의 나팔수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선 현장에서 경험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잘못된 교통정책에 대한 시정요구 등으로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13. 수익증대를 위한 단기·중장기 프로그램 개발로 업계 경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선 교통방송국의 전문성 등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다 공격적인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전문 방송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법인격인 공사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14. 방송심의위원회의 강영숙 위원은 교체하고 실제 교통방송청취자 중 자격 해당자를 선임하기 바람.
15. 인터넷방송, CATV방송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재검토하기 바람.
16. 교통정보센터 계약방법을 일반경쟁으로 개선하기 바람.

< 지하철공사 > : 23건

1. 지하철 1~4호선에서 유출되는 지하수가 지난 5년동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0년 유출량이 1,734만톤인데 점차 줄어서 2004년도는 1,023만톤으로 약 40% 감소되었음. 이는 서울이 황폐화 되어 간다는 증표라 생각됨. 수맥이 없는 땅은 사막과 다름없음. 지하수 유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유출되는 지하수를 최대한 자연 순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2. 종합화상시스템(CCTV)이 전차량에 설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가급적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2004. 7. 1. 교통체계개편이후 지하철 이용 승객이 타 교통수단으로 이동하여 수송 수익이 감소될 확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기 바람.
4. 노후시설에 개·보수에 대한 막대한 재원의 조달비용은 구조조정 및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5. 전력 소비가 많은 지하철 공사에서는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지정하여 집중 절약과제 부여와 수범사업장은 표창하는 등 전력 절약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지하철 안전사고의 원인은 시설물 노후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담당 직원들의 점검 소홀 등 안일한 근무태도가 더 큰 문제이므로 명예 퇴직을 유도하여 아웃소싱 차원에서 협력업체로 위탁관리를 하고, 향후 퇴직 인원에 대하여는 충원할 것이 아니라 전문 용역사에 입찰용역 위탁형태로 관리하면 인건비 절감 및 전문성·책임성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검토 요망

7. 광고료 체납으로 계약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광고 건에 입찰참여를 못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참여제한 문안을 명기하기 바람.
8.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내부승진이 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하기 바람.
9. 각 역사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물류운송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10. 직원들의 해외연수실적이 연간 150여명으로 저조한데 많은 직원이 다녀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물품구매 관련 규정을 보면 “계약목적,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시에 자격제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필요시에”라는 문구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하기 바람.
12. 직원 근무복을 호수로 지급하다보니 같은 호수라도 제작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이를 치수로 개선하기 바람.
13. 115개역 중 운영수익에 대한 수지분석을 실시하여 적자가 나는 15개역에 대해서는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4. 지하철의 미담사례를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15. 불법 노조파업과 관련, 해당 노조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징계조치하기 바람.
16. 정거장 내부 부대건축물(인공동굴 등)은 FRP자재 등의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명 피해가 심각하므로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고 향후 시설 계획시는 불연자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시공하기 바람.

17. 교통 혼잡의 개선책으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이용을 강요하고 호소하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보호 등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미흡하여 설득력이 없으므로 지하철 내 공기질,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8. 공사정관 및 지하철공사설치조례에 의거 구성하는 이사회에 시의원을 비상임 이사에 임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9. 전동차 구입시에는 2004년도에 도출된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업체를 다수 참여시켜 시장경제원리에 위한 가격경쟁이 되도록 공정성에 입각한 개선방향을 연구·검토하기 바람.
- ① 2004 서울지하철공사 전동차 구입 입찰시 다년간 객차를 제작, 납품, 수출하였고 세계 초일류 전동차 제작회사인 일본 히다찌와 기술 제휴한 디자인 리미트 회사를 심사위원 주관에 개입될 수 있는 심사를 하여 떨어뜨리고 1개 회사를 단독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는 문제
 - ② 점수에 의한 심사에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제작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며 제작 능력이 있으면 모든 업체가 가격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③ 경쟁업체가 가격경쟁까지 참여하여야만 2000년과 같이 독점으로 인한 고가 구매 피해를 막을 수 있음.
 - ④ 전동차의 품질은 입찰시 제시한 납품 사양서에 의한 제작과정의 철저한 감독과 납품시 철저한 검사의 필요성
20. 3000억원이상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봉급인상, 직원증원 요구와 지하철시설의 사유화 인식(예 : 지하철 시설물에 함부로 노동조합 게첨물 부착 등), 사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는 지하철 노조원의 노동쟁의 방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기 바람.

21.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품권 구입시 선호도 조사를 명목으로 100% 정액으로 구입하는 바, 선호도 조사를 하지 말고 일반 경쟁 입찰하에 구입하기 바람.
22. 노조 간부출신은 1인 독자 업무를 부여하고 특히 현업부서에 근무할 경우에는 Group 업무 부여를 지양하기 바람.
23. 계약과 관련 담합업자는 향후에는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 운영하고, 불용 재산 매각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2차 심의(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바람.

< 도시철도공사 > : 20 건

1.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물류운송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2. 차량기지를 기지로만 활용하지 말고 복합건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원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유실수를 식재하기 바람.
3. 불법 노조파업과 관련, 해당 노조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징계조치하기 바람.
4. 선진 기술도입 등을 위하여 임·직원의 해외출장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기 바람.
5. 쌍둥이역명은 개명이 바람직함.
6. 문화 축제행사를 더욱 확산하여 전 역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임원 등의 임명시 내부적인 특별승진도 병행하여 직원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검토
8. 자재 및 부품구입에 있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비용절감에 노력하기 바람.

9. 각종 보수공사에 대한 감리 철저히 시행하기 바람.
10. 지하철역사 지하수 유출량이 지난 4년동안 1일 유출량이 144천톤에서 123천톤으로 약 14% 줄어들고 있음.
이는 서울의 모든 땅이 황폐화 되고 있는 증거임.
외국에서 지하철 사고가 지하수와 관계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공사는 지금부터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지하수 유출량을 막고 유출되는 지하수를 자연 순환되도록 노력해서 향후 발생할 대형 사고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1. 교통혼잡의 개선책으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강요하고 호소하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보호 등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미흡하여 설득력이 없으므로 지하철 내 공기질,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와 관련하여 표준규격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상태임. 내년 초에는 제정되도록 적극 협의하기 바람.
13.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할 경우 수송수요가 적절한 지 노원구에 위치한 창동차량기지과 관련하여 검토바람.
14. 노사화합 차원에서 차량기지 근무직원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람.
15. 공사정관 및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에 의거 구성하는 이사회에 시의원을 비상임 이사에 임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6. 3000억원이상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봉급인상, 직원증원 요구와 지하철 시설의 사유화 인식(예 : 지하철 시설물에 함부로 노동조합 게첨물 부착 등), 사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는 지하철 노조원의 노동쟁의 방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기 바람.

17. 전력 소비가 많은 지하철 공사에서는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지정하여 집중 절약과제 부여와 수범사업장은 표창하는 등 전력 절약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8. 광고료 체납으로 계약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광고 건에 입찰 참여를 못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참여제한 문안을 명기하기 바람.
19. 노조 간부출신은 1인 독자 업무를 부여하고 특히 현업부서에 근무할 경우에는 Group 업무 부여를 지양하기 바람.
20. 계약과 관련 담합업자는 향후에는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 운영하고, 불용 재산 매각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2차 심의(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바람.

4. 자료요구사항 : 총 39 건

< 교통국 > : 9 건

1. Green Parking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실적
2. 터미널 운영과 관련
 - 터미널운영현황
 - 상봉터미널 소송 진행상황
 - 터미널의 재정지원에 대한 서울시 의견
 - 터미널 자생방안(터미널 복합개발관련 법령 등)
3. 지하철, 도시철도, 철도청, 버스 수송현황

4.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전·후 2004년 6월, 7월 차량통행속도 비교자료 제출
5. 입찰 간선버스 비용 내역제출 9월분 운송비용 지출내역
6. 개인택시·화물차량의 차고지 밖 박차 사항 자료제출
7. 주차 종합계획 제출
8. 타시도 교통영향심의위원 위촉현황
9. 교통문화교육원의 2004년도 교육실적 및 2005년 운영계획

< 지하철건설본부 > : 7 건

1. 지하철9호선의 정거장별 출입구 현황
2. 수색역 승강편의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3.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사례
4. 복공판이 노면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치된 사례
5. 기존열차에 전자파 차폐판 설치된 차량현황
6. 휠체어리프트 규격개선을 위한 노력내용
7.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9페이지 하도급 계약서 전자 날인된 원본

< 교통방송본부 > : 2 건

1. KBS i 와 협력한 모바일 서비스 후 실적에 대한 자료
2. 2001년 정기감사시 재정상 조치인 357천원에 대한 세부내역

〈 지하철공사 〉 : 11 건

1. 1000만원이상 자재소모품에 대하여 기존재고, 수입, 단기불출, 기말 재고 순으로 작성
2. 홍제역사 임대관련 계약서 및 보증금 관계서류
3. 상가임대관련 미수금내역
4. 지하철 이동통신관련 계약서 사본
5. 이동통신관련 사무위임전결규정 및 이동통신관련 방침서 사본
6. 이동통신 요금 징수방법 변경방침
7. 최근 원가조사 후 사용료 조정안 방침
8. 이동통신사업관련 선로임대사업관련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법적 근거자료
9. 직접 이동통신사업 참여 검토한 자료
10. “AFC 승차권 시스템 프로그램 개량”용역 자료
11. 지하철 연계버스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건

〈 도시철도공사 〉 : 10 건

1. 중재재정의거 시행할 인력진단 연구용역 추진상황
2. 부품구입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일부 부품의 경우 400%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
3. 전동차 부품 재고관리기준 및 대책

4. 이동통신사업 참여 가능여부 법률검토 결과
5. 결산서상 손비 처리한 1건의 처리여부
6. 연수원 강의목록과 의식개혁 강좌 프로그램
7. 개인성과급 및 기관성과급 지급내역
8. 전동차 내장재 교체 사양
9. 2003~2004 승차권 응찰사별 입찰가격 자료
10. 2003~2004 전동차 정비용역 응찰사별 입찰가격 자료

Ⅲ. 기타 감사의견

- 해당사항 없음